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홍남기 (기획재정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보조사업실적보고서 등 제출 지연 기간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7145호, 2020. 3. 31. 공포, 10. 1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보조금 삭감기준을 시행령에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등 제출 지연 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기준(안 제12조제3항)

보조사업실적보고서 등 제출 지연시, 중앙관서의 장은 제출 지연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최대 50%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삭감 지급할 수 있도록 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와 협의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9. 3. ~ 9. 10.) 예정

3)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법 제27조 3항의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” 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.

1. 3개월 이상 지연 제출하는 경우 : 보조금 10%이내 삭감
2. 6개월 이상 지연 제출하는 경우 : 보조금 20%이내 삭감
3. 12개월 이상 지연 제출하는 경우 : 보조금 50%이내 삭감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보조사업의 실적 보고) ① · 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12조(보조사업의 실적 보고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법 제27조 3항의 “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” 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.</u> <u>1. 3개월 이상 지연 제출하는 경 우 : 보조금 10%이내 삭감</u> <u>2. 6개월 이상 지연 제출하는 경 우 : 보조금 20%이내 삭감</u> <u>3. 12개월 이상 지연 제출하는 경우 : 보조금 50%이내 삭감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기획재정부 재정성과평가과	
연 락 처	(044) 215 - 5377